##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195

발의연월일: 2020. 7. 20.

발 의 자: 추경호·김석기·김정재

권성동 · 강대식 · 강기윤

이종배 · 김승수 · 김예지

양금희 • 안병길 • 윤창현

곽상도 • 홍석준 • 윤두현

박덕흠 • 홍문표 • 유경준

윤한홍 의원(19인)

#### 제안이유

현 정부는 세원 확보를 위해 법인세율 인상, 비과세·감면 혜택 축소라는 정책기조의 일환 속에서 각종 생산성향상시설, 안전시설 등 특정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을 일괄적으로 축소해왔음. 그 결과, 지난해 설비투자는 2018년에 비해 6.2% 감소하였고, 올해 1분기 설비투자는 전 분기 대비 3.1% 줄면서 1분기 경제성장률이 1.3% 감소하는데 영향을 미친 결정적 요인 중 하나였음.

특히 코로나 경제충격으로 기업 체감경기가 급속도로 얼어붙으면서 지난 5월 기업경기실사지수는 글로벌 금융위기 시절인 2009년 3월(58) 이후 가장 낮은 53을 기록했음.

지금이라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

고, 기업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도해냄으로써 코로나 경제충격에서 하루빨리 벗어나는 동시에 성장잠재력을 확충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 야 하는 상황임. 이에 생산성향상시설과 안전시설 등 특정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을 확대하고, 일몰을 연장함으로써 기업의 투자의욕을 제고하고자 함.

아울러 주요 선진국을 포함한 OECD 대부분의 국가들은 미래 먹거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추세인 데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2014년부터 세액공제율을 지속적으로 축소해 오면서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한 투자유인이 감소함.

이에 연구·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율을 높여 해당 특례제도가 기업의 연구·인력개발을 장려함으로써 기술혁신을 통한 성장동력 확보 및 일자 리 창출에 실효적인 수단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제3호가목 및 나목).

## 주요내용

- 가. 연구·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율을 높여 해당 특례제도가 기업의 연구·인력개발을 장려하는 실효적인 수단이 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
- 나. 2021년 12월 31일로 일몰이 종료되는 안전시설·생산성향상시설 등특정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제도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고, 공제율을 대기업 5%, 중견기업 10%, 중소기업 10%로 인상

하여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인하고자 함(안 제25조제1항).

법률 제 호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3호가목 중 "100분의 25(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4 0,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0)"를 "100분의 40(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0,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하고, 같은호 나목 1)중 "100분의 25"를 "100분의 30"으로 하며, 같은목 2)의가)중 "100분의 15"를 "100분의 20"으로 하고, 같은목 2)의나)중 "100분의 10"을 "100분의 15"로 하며, 같은목 3)중 "100분의 8"을 "1 00분의 13"으로 하고, 같은목 4)중 "100분의 2"를 "100분의 6"으로, "해당 과세연도"를 "100분의 3 + 해당 과세연도"로 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1년 12월 31일까지"를 각각 "202 3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제할 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시설에 대한 투자금액 또는 취득금액(해당 시설에 딸린 토지의 매입대금은 제외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다음 표에 따른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항제6호의 시설에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에 대한 제1항에 따라 공제할 금액은 그 투자금액에 100분의 2(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 중소기업의 경우

에는 100분의 10)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시설	공제율		
기 <sup>년</sup>	중소기업	중견기업	그 밖의 기업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항 제4호가목부터 마목까지,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의 시설	100분의 10	100분의 10	100분의 5
제1항제4호바목의 시설	100분의 10	100분의 10	100분의 10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 다.

제3조(특정 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 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제10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각 과	세액공제) ①
세연도에 연구·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	
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	
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인력개발비	
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1. • 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거	3
나 제1호를 선택하지 아니한	
내국인의 연구·인력개발비(이	
하 이 조에서 "일반연구·인력	
개발비"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 중에서 선택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	
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일반	
연구·인력개발비가 발생하지	
아니하거나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나목에 해당하는 금액

- 가.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5(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4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4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 나.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 다 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 1) 중소기업인 경우: 100분의 25
  - 2)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

7}
<u>100분의 40(중견기업</u>
<u>의 경우에는 100분의 50,</u>
의 경우에는 100분의 50,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 분의 60)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 분의 60) 나

- 가)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 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100분의 15
- 나) 가)의 기간 이후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100분 의 10
- 3) 중견기업이 2)에 해당하 지 아니하는 경우: 100분 의 8
- 4)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 는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른 비율(100분의 2를 한도로 한다)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 액에서 일반연구·인력개 발비가 차지하는 비율 × 2분의 1

## ② ~ ④ (생 략)

제25조(특정 시설 투자 등에 대 제25조 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제1 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

가)
100분의 20
나)
9)
100 H
<u>100분</u>
<u>의 15</u>
3)
<u>100분</u>
의 13
4)
<u>100분의 6</u>
100분의 3 + 해당 과세
연도
~ ④ (현행과 같음)
스(특정 시설 투자 등에 대
세액공제) ①
- II - I O / III / U

2

한

6호에 해당하는 시설에 <u>2021년</u>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거나 제4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u>2021년</u> 12월
31일까지 취득(신축, 증축, 개축 또는 구입을 포함한다. 이하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투자를 완료한 날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 1. ~ 6. (생 략)

② 제1항에 따라 공제할 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시설에 대한 투자금액 또는 취득금액(해당시설에 딸린 토지의 매입대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다음 표에 따른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항제6호의 시설에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

<u>2023년</u>
<u>12월 31일까지</u>
<u>2023년 12월</u>
<u>31일까지</u>

#### 1. ~ 6.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공제할 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시설에 대한 투자금액 또는 취득금액(해당시설에 딸린 토지의 매입대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다음 표에 따른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항제6호의 시설에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

액에 100분의 2(중견기업의 경 0)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우에는 100분의 5,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공제율_		
<u>시설</u>	<u>중소</u> 기업	<u>중견</u> 기업	그 <u>밖의</u> 기업
제1항제1	100	100	100
<u>호·제2호</u>	분	<u>분</u>	<u>분</u>
<u>및 제6호</u>	의	<u>의</u>	의
<u>의 시설</u>	<u>7</u>	<u>3</u>	<u>1</u>
제1항제3 호 및 제4 호가목부 더 마목까 지의 시설	100 분 의 10	100 분 의 5	<u>100</u> 뿐 의 3
제1항제4 호바목의 시설	100 분 의 10	100 분 의 10	100 분 의 10
<u>제1항제5</u> 호의 시설	<u>100</u> 분 의 10	100 분 의 5	<u>100</u> 분 의 1

③ ~ ⑦ (생 략)

의 경우에는 2020년 1월 1일부 제1항에 따라 공제할 금액은 <u>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투</u> <u>그 투자금액에 100분의 2(중견</u> 자하는 경우에 대한 제1항에 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 중 따라 공제할 금액은 그 투자금 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

		27 -1) Q	
	<u>공제율</u>		
<u>시설</u>	<u>중소</u> 기업	<u>중견</u> <u>기업</u>	<u>그</u> 밖의 기업
제1항제1 호부터 제 3호까지, 같은 항 제4호가목 부터 마목 까지, 같 은 항 제5 호 및 제6 호의 시설	<u>100</u> 분 의 10	<u>100</u> 분 의 10	<u>100</u> 분 의 5
제1항제4 호바목의 <u>시설</u>	100 분 의 10	100 분 의 10	100 분 의 10

③ ~ ⑦ (현행과 같음)